

레미콘 營業의 實務 - II

崔 在 眞 譯

〈漢陽大土木工學科 博士過程〉

日本 레미콘業界는 年賣出額이 무려 2兆円에 가까운 대규모市場을 놓고 營業활동을 벌이고 있다.

日本の 레미콘營業이 우리의 경우와는 市況・營業制度 등 相異한 點이 많겠지만 概略的인 營業의 實務를 살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号부터 「시리즈」로 약 6회에 걸쳐 게재되는 「레미콘營業의 實務」는 日本 「建設材料研究會」에서 발간한 것을 번역했다.

〈編輯者 註〉

目 次

머리말 - 복잡한 레미콘 流通

第 1 章 레미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1) 原價計算을 해보자
- (2) 레미콘의 가격은 「原價 플러스 α 」로 결정한다.
 - a. 直販의 경우
 - b. 販賣店을 통하여 레미콘을 판매하는 경우
 - c. 協同組合이 共販하는 경우

第 2 章 레미콘 賣買의 構造

- (1) 契約을 주고 받자
 - a. 基本契約과 個別契約
 - b. 契約 當事者
 - c. 瑕疵擔保責任

- (2) 레미콘流通의 여러가지
- (3) 레미콘流通의 歷史
- (4) 레미콘流通의 問題點

第 3 章 黒字會社와 赤字會社

- (1) 값싼 販賣와 過剩 서비스
- (2) 싸게 팔면 여파가 누구에게 미치는가

(3) 레미콘 家族寓話

第 4 章 企業防衛를 위하여

- (1) 國家의 中小企業保護策
 - a. 金融 등에 관한 法律
 - b. 中小企業構造의 高度化와 業種別 近代化에 관한 法律 向上에 관한 法律
 - c. 中小企業 設備의 近代化, 經營의 合理化, 技術의
 - d. 從業員 福祉의 向上과 勞動力의 確保에 관한 法律
 - e. 需要의 增進에 관한 法律
 - f. 組織制度에 관한 法律

(2) 함께 살아가면 두렵지 않다

- a. 協同組合에 대하여
- b. 工業組合에 대하여
- c. 企業組合에 대하여
- d. 協業組合에 대하여

(3) 組合은 모두의 것

(4) 지나치면 批判을 초래한다

2 章 레미콘 賣買의 構造

(1) 契約을 주고 받자

상거래에는 계약이 원칙이다. 「그 물품을 사고 싶다」 「팔겠다」 하는 것이 商契約이다. 그리고 그 물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 性狀, 能力 등을 가지는 것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언제 그 물품을 인도하는가, 운반비는 어떻게 하는가, 대금과 운반비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는가, 그 물품의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등의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또 일반적으로 관습화 되어 있는 사항과 법률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항에 하나 하나 자세히 기재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종래 레미콘 업계에서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행위가 뜻밖일 정도로 등한히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레미콘의 需給關係가 다양화됨에 따라 口頭契約의 애매한 것이 말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와 문서에 의한 계약을 주고 받는 일이 필요하다.

또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표현 외에 約定, 協定, 合意... 등의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두 「약속」이라는 의미이며 이것을 書面으로 한 것이 契約書, 約定書(約款), 定款, 協定書, 協約書, 覺書, 同意書, 合意書... 등으로 효과는 거의 같다.

a. 基本契約과 個別契約

基本契約이란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한 레미콘의 판매계약으로서 工事物件에 기준한 레미콘의 품종, 수량, 納期, 受渡(受·引渡)條件, 單價, 代金の 지불기일과 決濟方法, 品質保證, 계약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며 個別契約에서는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미콘의 거래처는 계속

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마다 계약하는 수고를 피하여 個別의 물건에 대해서는 個別契約(注文書·注文請書의 교환)에 의해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 경우에도 基本契約에 기재하여야 할 거래조건은 注文請書에 명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全國레미콘工業組合聯合會에서는 1977년 「레미콘産業近代化委員會」를 설치하여 4개의 分科會를 두고 레미콘 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래에 관한 사항도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계약을 위한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레미콘 標準거래約款(案)」을 制定하였다. (참고자료 2-1 참조)

— 《참고자료 2-1》 —

레미콘 標準거래約款(案)

레미콘의 거래에 관해 공급자 및 구입자는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標準거래約款으로서 준수하는 것으로 한다.

1. (本約款의 適用) 本約款은 레미콘의 판매에 대해서 표준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내용은 個別의 거래 때마다 체결하는 판매계약(이하 個別契約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賣買의 対象) 本契約에 기준한 賣買対象 商品은 「레미콘」으로 한다.

3. (去來) 구입자와의 거래는 「레미콘 合意表」에 따라 指定事項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며 그 물건마다 接수를 받는 것으로 한다.

4. (見積有効期間) ① 거래를 위해서는 見積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유효기간은 見積書 제출일로부터 2 주 간으로 한다.

③ 전적유효기간중에 注文書의 제출이 없는 경우 当該見積書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

5. (個別契約) ① 레미콘의 종류, 수량 기타 「레미콘 合意表」에 정하는 각 사항 및 단가, 代金決濟條件 등, 賣買에 필요한 조건은 個別契約에서 정하는 것 이외는 本約款에 의한 것으

로 한다.

② 個別契約은 特約이 없는 한 注文書, 注文請書의 교환에 의해 성립한다.

6. (거래價格) 가격에 대해서는 標準價格表에 기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7. (契約期間) ① 個別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설정된 가격의 유효기간은 出荷베이스에 있어서 當該會計年度(4월~3월) 말까지로 한다.

② 個別契約에 기초한 공급이 當該會計年度를 넘어서 次期以後의 會計年度에 걸치는 경우의 出荷分の 가격은 新會計年度에 정해진 標準價格表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유효기간내에도 원재료 등에 현저한 가격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쌍방협의를 의해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8. (상품의 受渡) 레미콘의 受渡에 대해서는 JIS A 5308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짐을 내리는 지점」으로 한다.

9. (品質의 保證) ① 레미콘의 품질은 제 3 조의 「레미콘 合意表」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JIS A 5308에 의해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前項에 정하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를 행한다.

10. (受入 檢査) ① 구입자는 前條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受入時에 품질검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룯드 및 그 크기는 쌍방협의로 정한다.

③ 제 1 항의 검사에 대하여 공급자가 시험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요하는 諸費用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代金 決済條件) ① 레미콘 대금의 결제 조건은 원칙적으로 月末마감 90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한다.

② 前項의 결제조건을 초과하여 결제가 행해지는 경우는 金利를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12. (不可抗力에 의한 免責)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 法令에 의한 제한, 勞動爭議 기타 공급자 및 구입자가 합의한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한 사정 등으로 引渡가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될 때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급자는 그 책임이 免責되는 것으로 한다.

13. (瑕疵 担保責任) ① 공급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조건과의 相違에 따른 瑕疵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受渡以後의 현장내 운반, 시공 등에 의한 瑕疵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附帶條件) 夜間割増, 小型車割増, 거리 할증, 각종 시험비(시험 비비기 등) 기타 부대 조건에 대해서는 標準價格表 또는 個別契約締結 때 명시하며 雙方確約하여야 한다.

15. (기타) ① 本約款의 이행에 대하여 疑義가 생긴 경우에는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本約款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쌍방협의를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JIS A 5308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同事項에 대해서는 쌍방협의를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 1975년에 발생한 「欠陥레미콘」 事件이래 수입자·건설업자로부터 레미콘의 품질에 관한 사고방식이 지향되어 레미콘 업계의 전체 의견으로서 계약때에는 「레미콘의 品質에 관한 協定書」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2-2 참조)

— 《참고자료 2-2》 —

레미콘의 品質管理에 관한 協定書

레미콘 購入者 (이하 甲이라 한다), 레미콘 販賣取扱店(이하 乙이라 한다)와 레미콘 생산者(이하 丙이라 한다)는 레미콘(商品)의 거래에 있어서 그 품질에 관해서는 JIS A 5308에 準拠하는 것으로 하며 不記事項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계약한다.

記

1. 甲이 乙 또는 丙에 대하여 레미콘을 發注하는 경우의 強度는 모두 呼稱強度*2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乙 또는 丙은 納品한 레미콘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JIS 規格品으로서 受注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附表1*2의 책임분야에 기재된 품질관리를 행한다.

3. 레미콘의 受渡는 甲이 지정한 현장에서 운반차의 배출지점으로 한다.

1 지점에서 甲은 JIS 規格品인 경우는 JIS A 5308에 의한 受人檢査, JIS 規格外品인 경우는 甲, 乙, 丙 三者가 정한 受入檢査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짐을 내리는 지점에서의 受入檢査를 위한 시험은 원칙적으로 甲이 실시한다. 乙 또는 丙은 이에 협력하여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짐을 내리는 지점에서 乙 또는 丙이 행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甲, 乙, 丙 협의 하여 이것을 가지고 受入檢査로 할 수 있다.

5. 특히 受入檢査를 위한 시험을 乙 또는 丙이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6. 레미콘 치기관리 및 치기후의 養生에 대해서는 甲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기타 甲이 구입하는 레미콘의 합의사항은 附表2 合意表*2에 의한 것으로 한다.

8. 이 협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疑義가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原因者負擔의 원칙에 의한 상호의 의견을 존중하며 甲, 乙, 丙이 협의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을 보증하기 위하여 本書 3통을 작성하여 甲, 乙, 丙 각자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통씩 가진다.

設計基準強度 또는 이에 필요한 補正(1)을 더한 값 또는 耐久性, 水密性 기타의 요구로부터 정한 強度(2)로 한다.

(注1) 기온에 따른 補正 및 시공조건에 의해 필요로 되는 補正을 가리킨다.

(注2) 「물시멘트비 또는 單位시멘트량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응한 強度를 契約強度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1978년 6월에 JIS A 5308이 개정되어 이들 조건을 포함시킨 「呼稱強度」로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다.

b. 契約 當事者

레미콘 생산·구입의 관계는 레미콘 공장에서로부터 건설현장으로 납품된다는 면에서 보면 거래계약은 「레미콘 : 건설업자」의 관계가 된다.

그러나 후에도 기술하는 바와 같이 레미콘의 진정한 구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發注한 자(수요자)이며 건설업자는 그의 지시로 레미콘 시공을 행하는 입장으로서 레미콘을 直販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판매점(경우에 따라서는 1차·2차의 판매점)과 협동조합이 레미콘 공장과의 사이에 介在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상품유통은 직접적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도대체 누구와 누구가 계약당사자이며 레미콘 공장으로서 누구와 계약을 하면 좋겠는가가 문제로 된다.

需要者側으로부터 본 경우에는 건설업자와의 「建設契約」이 교환되기 때문에 레미콘의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른 한편의 계약당사자는 元請의 건설업자인 것이 거의 틀림없다. (비록 시공을 맡는 것이 下請業者 혹은 再下請業者라고 하여도 그 공사감독을 맡는 것은 元請業者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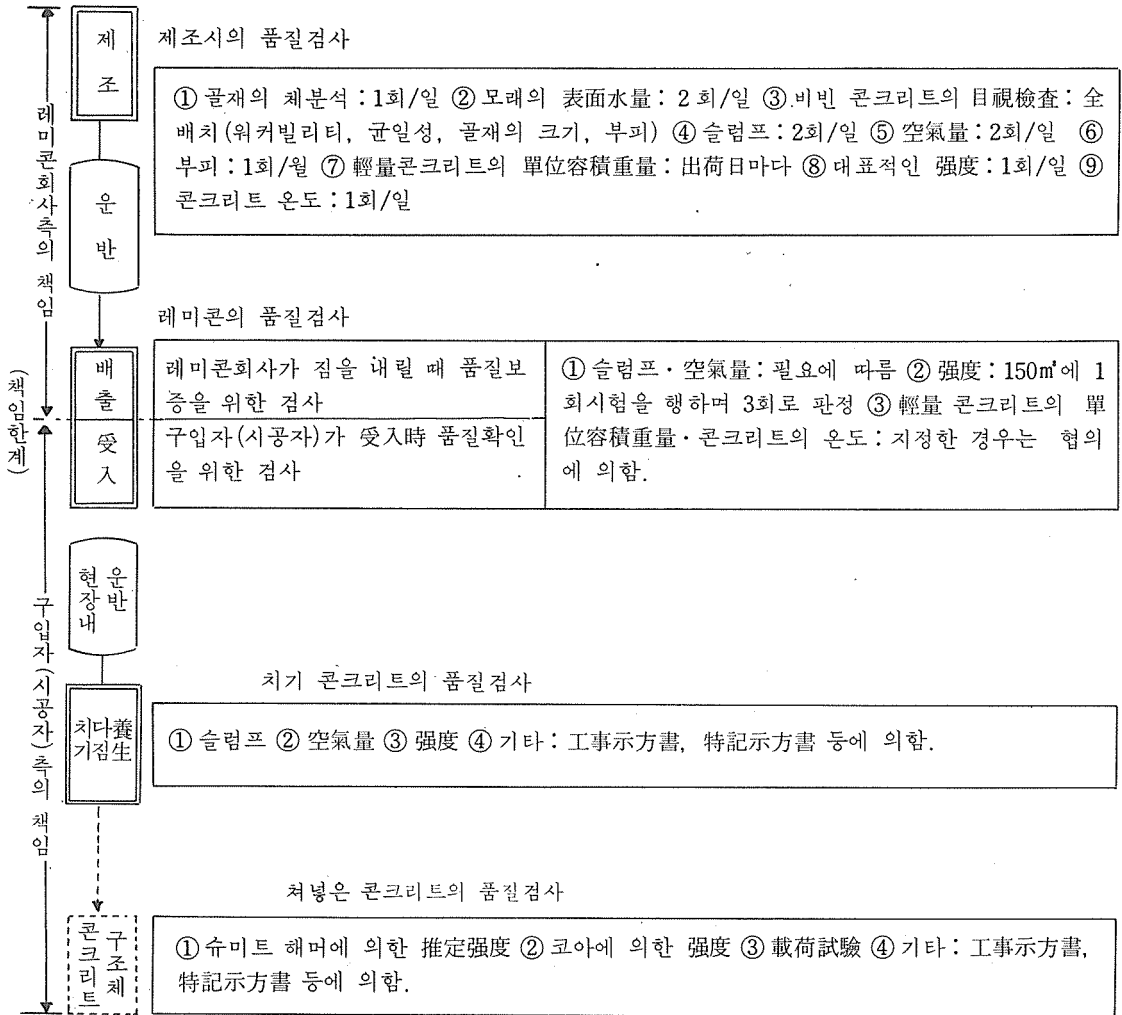
레미콘을 直販하는 경우에는 레미콘 공장(레미콘 회사)→건설업자라고 하는 관계가 계약당사자인 것이 대체로 맞는다.

레미콘 공장과 건설업자와의 사이에 판매점이 개재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경우

* 1 이 協定書는 1976년 2월 24일 全國레미콘工業組合 聯合會 임시총회에서 결정하였다.

* 2 당시는 「契約強度」로 되어 있었으며 契約強度란

附表 1. 콘크리트 工事工程에서의 品質檢査와 責任分野



판매점이 流通機構로서의 입장에 있으며 더구나「販賣手數科」를 취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의(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관여자인 것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계약의 관여자라 해도 그 입장이 건설업자측의 입장인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종래 일반적으로(中間者라는 입장에서)구입자인 건설업자를 당사자「甲」으로 하고 생산자인 레미콘 공장을「丙」으로 하며 판매점은「乙」이라 하는 형태로서 계약당사자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협동조합이 完全供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이에 협동조합이 들어간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完全共販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이(組合員을 공장으로 한다)하나의 기업으로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되므로 건설업자와의 관계는「레미콘 생산자」로서의 계약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組合員 공장과는 각각 個別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그 계약사항은「共販規定」에 의해 이루어지며 組合의 總會에서 의결

附表 2. 레미콘 合意表

레미콘 合意表		No. _____								
		년 월 일								
계 약 처		감독관청 또는 설계사무소명								
공 사 명		현장책임자								
소 재 지		현장 TEL.								
배합보고서제출기한		제출부수								
항 목	공 사 내 용	1	치 기 장 소							
		2	치 기 방 법							
		3	납 품 기 간	~	~	~				
		4	수 량(m ³)							
지 정 사 항	특 표 호	5	표준품·특주품의 구분	標·特·外	標·特·外	標·特·外				
		6	골재종류에 따른 구분	標·輕1· 輕2	普·輕1· 輕2	普·輕1· 輕2				
		7	호 칭 강 도							
		8	슬 럽 프							
		9	굵은 골재 최대치수							
		10	시멘트의 종류	N·H·	N·H·	N·H·				
	품	준	11	단위용적중량(경량콘크리트)						
			12	콘크리트온도(℃) (필요한 경우)						
			13	호칭강도를 보증하 는 재령 (일)						
		품	품	14	혼화재료의 종류					
				15	공 기 량(%)					
				15	기 타					
				참 고 사 항	참 고 사 항	17	설계기준강도(kgf/cm ²)			
						18	시 험 비 비 기			
						19	샘 플 링 회 수			
20	강도시험	외부시험소								
		공 장								
22	기 타									
비 고										
관 매 접 명		TEL. 담 당 자								

주) 「레미콘 合意表」의 기재요령은 卷末資料5로서 첨부하였다.

하여 조합원은 그 규정에 기초하여 「계약」한 것과 같은 구속을 받는 것으로 된다.
完全共販을 하지 않는 때의 협동조합의 경우

는 바람직한 방향에 따라 협동조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각각의 공장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c. 瑕疵擔保責任

레미콘의 個別契約은 「品質管理에 관한 協定書」 또는 이 협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레미콘 合意表」에 따라 행한다. 合意表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여 日本工業規格(JIS A 5308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정한 品質規定에 의해 「受人檢査」가 완료됐을 때는 그 이후의 瑕疵擔保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瑕疵擔保責任에 대해서는 商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商法 제 526조(目的物 檢査 및 通知의 義務)(제 1 항)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을 受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瑕疵 또는 數量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賣渡人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契約解除, 代金減額 또는 損害賠償을 청구하지 못한다. 賣買의 目的物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瑕疵가 있는 경우에 買受人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또 日本建築學會, 日本建築協會, 日本建築家協會 및 全國建築業協會가 연합하여 정한 工事請負契約約款의 참고에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契約 目的物의 瑕疵擔保期間은 引渡한 날로부터 石造, 콘크리트造 및 이들과 비슷한 건물, 기타 土地工作物의 경우 혹은 地盤의 시공에 기준한 것에 대해서는 2년간으로 한다. 단 請負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瑕疵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레미콘의 瑕疵擔保責任이 납품후의 最終(受人)檢査에 합격하는 것에 의해 免責으로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하는 소리가 있지만 레미콘의 품질이 시공에 따라 그 품질에 큰 변동이 생긴다는 점 및 強度에 대해서는 짐을 내리는 지점에서의 4週強度로서 보증하는 이외에 보증방법이 없다는 점으로부터 레미콘 업체로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만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미콘에 強度不足, 곰보, 균열, 콜드 조인트 등의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대부분이 시공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측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계약상의 명기가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콘크리트의 收縮底減, 耐久性의 향상을 목적으로 低슬럼프의 레미콘에 排出地點에서 高性能流動化混和劑를 혼입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소위 「流動化 콘크리트」에 의한 시공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流動化 콘크리트는 금후 그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레미콘 공장으로부터 출하한 레미콘이 베이스 콘크리트로서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全레미콘工業組合連合會는 다음과 같은 「流動化 콘크리트의 契約指針」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2-3 참조)

— 《참고자료 2-3》 —

流動化 콘크리트의 契約指針

1. 契約方法

거래조건의 문의시점에 流動化 콘크리트인 것을 명확히 한다. 계약은 베이스 콘크리트(공장에서 출하한 流動化前의 콘크리트)로 한다. 단, 規格外品이 된다. 일반 JIS 契格品으로 계약하고 그후에 流動化 콘크리트의 지시를 받으면 後術의 제경비의 증가분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流動化 콘크리트의 品質保證

上記의 계약에 기준한 경우에도 콘크리트의 품질은 베이스 콘크리트로 품질보증을 한다.

3. 流動化劑의 선정과 투입작업

流動化劑의 선정과 투입작업(공장 또는 짐을 내리는 지점)은 모두 구입자의 책임하에 두고 실시한다.

4. 流動化 콘크리트의 가격

上記의 經費增加分으로서 적어도 같은 종류

의 일반콘크리트 가격의 4.0%는 확보하여야 한다.

(1) 配合修正에 의한 콘크리트 증가

같은 종류의 일반콘크리트의 配合에 대한 配合修正(잔골재율·단위수량·단위시멘트량의 증가)에 의한 코스트 증가

(2) 기타의 코스트 증가

① 運搬車 損料

고소회전에 의한 기계의 마모, 애지데이터 성능에 따른 車輛制限, 교반작업에 의한 運搬効率的 저하 등에 의한 損料

② 試驗勞務費의 증가

시험 비비기, 슬럼프 시험 등에 의한 노무비 증가

(3) 레미콘 流通의 여러가지

이책의 첫머리에서부터 언급한 바와 같이 레미콘의 商品流通은 형태가 많다. 그 종류를 실태에 따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1) 協同組合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① 直販方式=레미콘 공장 → 건설업자

② 販賣店方式=레미콘 공장 → 판매점 → 건설업자

③ 販賣店併用方式=레미콘 공장 → 판매점(일부) → 건설업자

2) 協同組合을 경유하는 경우

① 直販方式=레미콘 공장 → 협동조합 → 건설업자

② 直販販賣店併用方式=레미콘 공장 → 협동조합 → 판매점 → 건설업자(代金回収 등을 판매

업자에게 대행시키는 등)

③ 販賣店代行直販方式=레미콘 공장 → 판매점 → 협동조합 → 건설업자(배달의 代행에 수수료 지불하는 등)

④ 販賣店方式=레미콘 공장 → 협동조합 → 판매점 → 건설업자

⑤ 協同共販方式=레미콘 공장 → 협동조합 → 판매점 → 商協同組合 → 건설업자(판매점이 협동조합을 설치하여 共販하는 경우)

⑥ 協組共同構入方式=레미콘 공장 → 협동조합 → 商協同組合 → 판매점 → 건설업자(판매점이 협동조합을 설치하여 레미콘의 공동구입을 하는 경우)

(4) 레미콘 流通의 歷史

최근에 와서 레미콘(과 기타의 建設資材)만의 판매점도 출현하였지만 판매점의 대부분은 시멘트 판매점과의 兼業이다. 레미콘의 판매형태 중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판매점을 경유하는 경우가 약 13%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그 비율이 높고 또 협동조합에 의한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組合에서도 50% 이상이 販賣店方式 또는 併用方式으로 판매점의 존재는 레미콘 업계로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미콘은 1950년에 최초의 공장이 操業을 시작하고부터 시멘트 各社는 시멘트의 확대판매 수단으로서 직계의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 시멘트 판매업자는 건설업자에게 포대 시멘트를 판매하는 것이 特約販賣店·代理店으로서의 주요한 업무이었으며 건설업자의 工事物件마다의 受注活動으로부터 매일의 納品合意, 트럭의 配車,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점 자신이

표 2.1 레미콘의 판매형태

항 목	直 販	판매업자 경유	共 販
전 국	37.2%	12.8%	50.0%
政 令 都 市	7.2	16.9	75.9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18.6	9.0	72.4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	37.4	16.3	46.3
郡 部	57.6	10.9	31.5

소유한 창고에의 보관 등의 배달업무를 행하였으며 더욱이 販賣代金の 收金과 이에 따른 위험 부담, 시멘트 회사와 수송업자에 대한 代金·運賃의 지불과 금융기능 등 폭넓은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것이 1955년대 이후 레미콘업이 산업으로서의 체재를 갖추자 시멘트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시멘트 대부분의 판매처가 종래의 건설업자에서 레미콘 공장으로 바뀌고 포대 시멘트로부터 탱크車에 의한 벌크 시멘트로 바뀐 동시에 시멘트 판매업자가 하는 기능도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결국 레미콘 공장의 신설시에는 판매점에서 受注의 確保만 가능하면 다음에는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멘트는 계속하여 납품되며 배달도 시멘트 회사의 서비스 스테이션으로부터 레미콘 공장의 시멘트 사이로로 直送될 뿐이며 또 판매에 관계된 신용문제도 레미콘 공장이 시멘트의 流通機構와 판매수단으로서 위치함으로써 레미콘 공장 자신이 시멘트 회사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판매점으로서의 受注, 배달, 위험부담 등의 기능은 크게 후퇴하였다.

이 때문에 시멘트 출하량중 레미콘으로의 전환율(轉換率)이 높게 되는데 따라 시멘트 판매업자의 存在理由가 차츰 약해지고 그 대응의 하나로서 판매점 레미콘이 출현하였다. 결국 自己資本에 의한 直系工場外에 시멘트 회사, 건설업자, 골재업자와의 共同出資에 의한 系列레미콘회사를 설치하여 레미콘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시멘트의 納品權을 확보하는 동시에 레미콘 사업 그 자체로부터도 이익을 얻게 되었다.

동시에 판매점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시멘트의 판매뿐만 아니라 그들 레미콘 공장이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도 하게 되었으며 그후 레미콘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오로지 레미콘만을 판매하는 판매점, 레미콘 공장의 판매부분과 건설업자의 자재담당부분이 독립한 것, 단순한 중개업자의 브로커적인 것 등에 의해 현재의 판매점

업계가 생성되게 되었다.

본래 판매점이 레미콘의 판매업무에 관계하는 일의 기능은 건설업자에 대한 工事物件마다의 受注活動으로부터 매일매일의 납품현장에서 合意立會, 代金回收과 그에 따른 금융기능 등, 일찌기 포대 시멘트 전성기에서의 시멘트 판매업자의 기능과 같은 광범위한 업무가 요구되지만 시장의 범위가 한정되고 제품의 物品流通은 공장에서 납품현장으로 직접 수송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점 개입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레미콘 商品流通의 問題點

종래부터도 판매점 개입 없이 레미콘 공장으로부터 직접 건설업자에게 레미콘을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일찌기 시멘트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판매점에 대해서는 시멘트의 레미콘 공장으로서의 流通과 함께 레미콘의 商品流通에 대해서도 판매점에 商權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멘트 업계로부터 레미콘 업계에 대하여 판매점의 商權尊重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레미콘 업계가 過當競爭의 방지를 위하여 협동조합에 의한 共販을 실시하고 적정가격의 유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때 판매점 상호의 과당경쟁에 의해 협동조합의 설정가격 이하로 레미콘이 판매되는 사태가 일어나곤 하였다.

이것은 판매점이 자기의 수수료 수입(판매점 口錢)을 압축하거나 代金決濟條件을 장기화하는 일에 의해 건설업자로부터의 受注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수단이지만 이것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판매점 자신의 박리, 금리부담의 증대 등에 의한 경영위기를 초래하여 그 결과는 취급 레미콘 공장에 대한 매매가격의 저하, 지불의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 레미콘 공장 경영의 악화와 직결되게 되었다.

그래서 판매점 업계 내부에 있어서 組織化가 진행되고 시멘트·레미콘 協同組合이 설립되며 레미콘 협동조합으로부터의 레미콘 공동구입 등의 활동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그 성과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